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일시 | 2019. 9. 19(목) 13:30~16:00

장소 | 시립서울청소년센터 3층 늘솔길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다시 청소년이다 범청소년계 추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다시 청소년이다

대한민국 미래 100년

범청소년계 추진위원회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 일시: 2019년 9월 19일(목) 13:30~16:00
- 장소: 시립서울청소년센터 3층 늘솔길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다시 청소년이다 범청소년계 추진위원회

시간	일정
13:00~13:30	등록
13:30~13:45	사회 :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회식] 개회사 :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세션 1〉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13:45~14:05	좌장 :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립·역량연구실장) [발표] 정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연수부장)
14:05~14:25	[토론] 박지현 (서원대학교 교수) 배영태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4:25~14:40	휴식
〈세션 2〉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14:40~15:00	좌장 :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립·역량연구실장) [발표]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참여연구실장)
15:00~15:20	[토론]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 배정수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장)
15:20~16: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목 차

○ 세션 1 1

[발표]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 3

정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연수부장)

[토론]

박지현 (서원대학교 교수) / 12

배영태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15

○ 세션 2 19

[발표]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 21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참여연구실장)

[토론]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 /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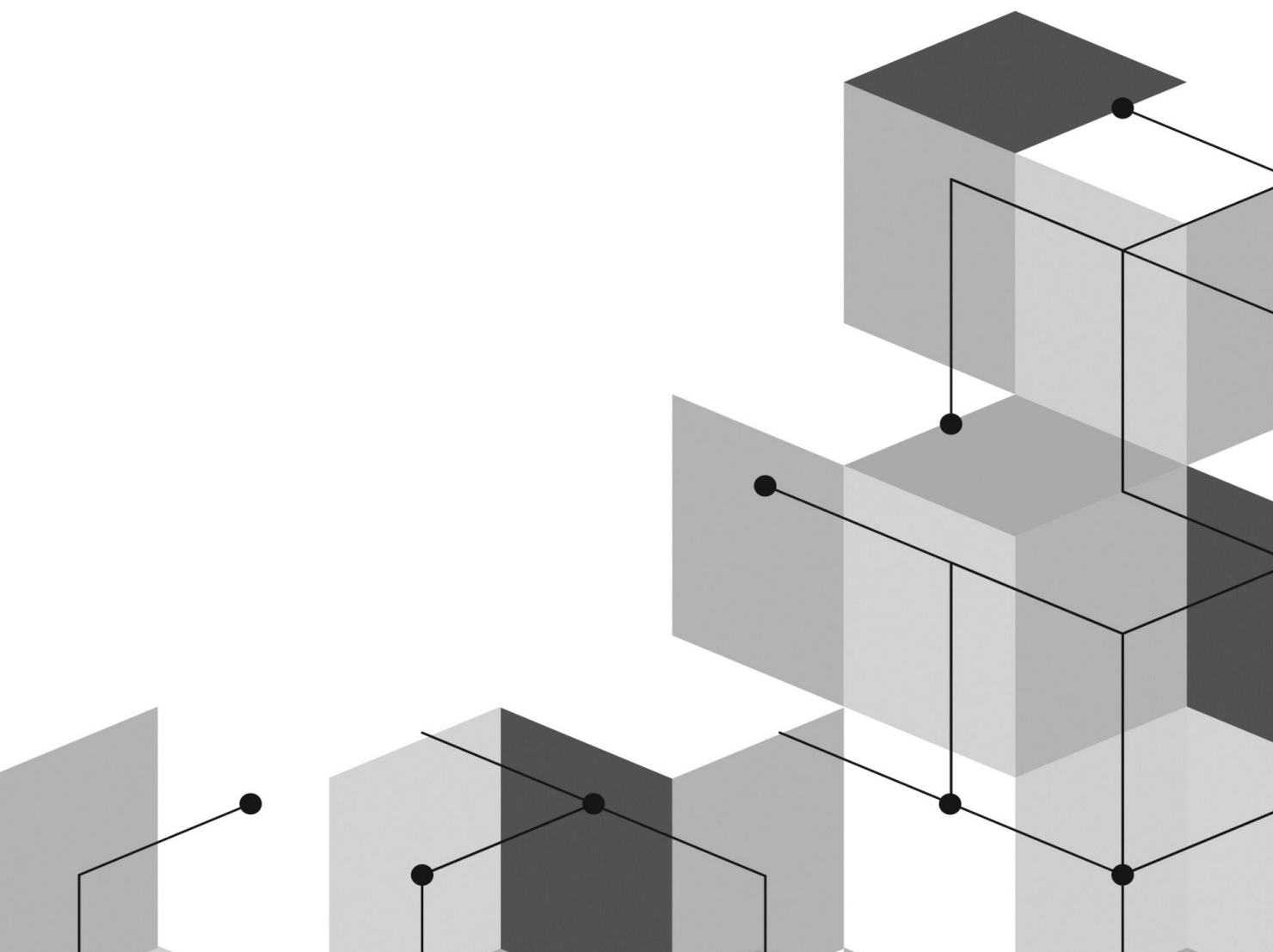
배정수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장) / 54

세션 1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발표 **정 지 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연수부장

토론 **박 지 현** 서원대학교 교수
배 영 태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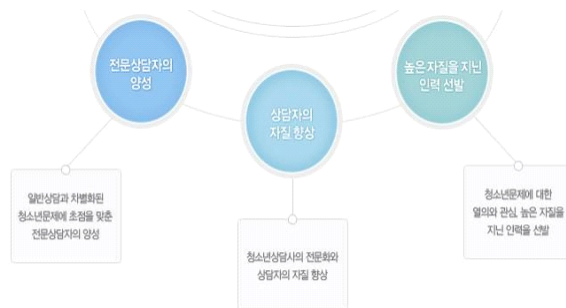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발전방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연수부 정지희

청소년상담사 ?

-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



청소년상담사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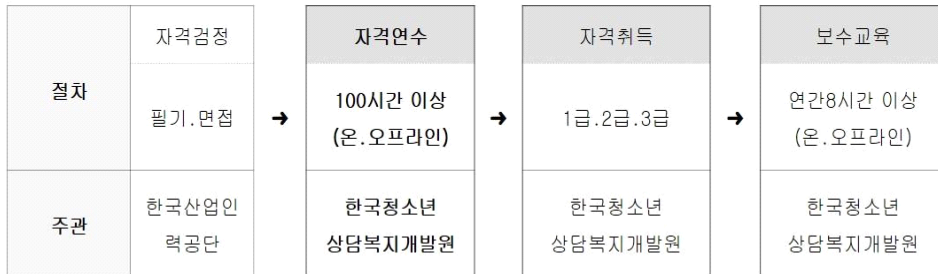
- 청소년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인력 필요
-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
- 청소년 선도 효과 및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추진경과

- 1991년 : 청소년기본법 제정
- 2000년 :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시행 공청회 개최
- 2001년 : 청소년기본법 개정
- 2003년 : 제1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
- 2013년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 2018년까지 청소년상담사 19,598명 양성(제16회)

자격 취득 절차

- 법적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자격자 취득 추이

- 청소년상담 자격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로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취득자 지속 증가

- 2003~2018년 청소년상담사 취득자(누적) : 19,598명
- 2011년 자격응시자 5,953명 → 2018년 13,171명(2.2배)
- 2011년 자격취득자 735명 → 2018년 2,700명(3.7배)

<자격검정 응시 및 자격취득자 추세 : 2011~2019년>

(단위:명)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시험접수	5,953	6,549	11,082	11,394	11,120	11,129	12,031	13,025	13,171
시험합격	953	1,822	1,034	2,583	2,466	3,290	2,612	2,857	3,495
자격취득자	735	1,292	1,227	1,982	2,147	3,010	2,724	2,411	2,700 ('19. 8월 기준)

청소년상담사 주요 역할(급별)

급	주요 역할	세부 내용
1급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 (지도 인력)	·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한 개입 ·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2급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상담사 (기간 인력)	·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3급	유능한 청소년상담사 (실행 인력)	·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 ·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등 급	응 시 자 격 기 준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격연수 개요

구분	연수 목표	과목	교육 시간
1급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	청소년상담 슈퍼비전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위기개입Ⅱ 청소년문제 세미나 청소년관련 법과 정책	총 101시간 (집합교육 56시간+ 사전과제 45시간)
2급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 과정과 기법 청소년 진로·학업 상담 청소년 위기개입Ⅰ 지역사회상담 부모상담	총 100시간 (집합교육 56시간+ 사전과제 45시간)
3급	유능한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개인상담 청소년 집단상담 청소년 발달문제 청소년 상담현장론 청소년 매체상담	총 100시간 (집합교육 56시간+ 사전과제 45시간)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2017)

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오지원, 박애실, 안예지, 전하은(2017)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원

- 응시자격 학과명 기준 : 상담학과와 심리치료학과를 추가
⇒ (반영) 2019년 법개정을 통한 상담학과 추가
- 응시자격 동일유사 교과목

<현행>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는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②면접원리, ③발달이론, ④집단상담, ⑤심리측정 및 평가, ⑥이상심리, ⑦성격심리, ⑧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⑨상담교육, ⑩진로상담, ⑪가족상담, ⑫학업상담, ⑬비행상담, ⑭성상담, ⑮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개선안>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는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②발달이론, ③집단상담, ④심리측정 및 평가, ⑤이상심리, ⑥성격심리, ⑦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⑧상담교육, ⑨진로상담, ⑩가족상담, ⑪학업상담, ⑫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2017)

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오지원, 박애실, 안예지, 전하은(2017)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실무 중심의 연수를 위한 연수시간 조정
 - 전체 101시간(사전 30시간, 집합 71시간)
 - 1안 전체 100시간(사전 44시간, 집합 56시간)
 - 2안 전체 100시간(사전 51시간, 집합 49시간)
 - ⇒ (반영) 전체 101시간(사전 45시간, 집합 56시간)
- 청소년 관련 모든 영역에 청소년상담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필요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발전 방안

- 청소년 위기개입 증가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상담전문성 담보
 - 2017년 청소년자살률(10만명당 사망건수) 7.7명, 자해관련 상담건수 증가, 청소년 폭력사건의 증가
 - 청소년상담실무 경력이 중심이 된 응시자격 강화
 - 예시) 청소년상담사 1급 : 상담복지관련 학과 박사학위 + 상담경력증명서 2년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 10사례 이상 보고서 제출
 - 청소년상담사 위기문제영역 전문과정 도입
 - 예시)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 위기개입 분야별(자살·자해, 청소년폭력, 인터넷중독, 청소년도박 등) 전문가 과정 도입 및 과정 이수 시 해당분야 전문가 활로 확대
 - 자격검정 합격자의 자격연수 이수연한 도입
 - 5년 이상 자격연수 적체인원 802명(적체 인원 중 29.1%, 2019년 기준)
 - 자격검정 합격 5년후 자격취득 인원 167명(자격취득자 0.9%)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발전 방안

- 청소년상담 관련 학계와의 협력을 통한 응시자격 교과목, 자격 연수 과목의 재정비 노력 필요
 - 응시자격 교과목의 표준 교과목 재정비 : 청소년상담복지 현실을 고려한 급별 필수 및 선택 교과목 선정
 - 대학(원)내 청소년상담 현장 실습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상담복지기관과의 연계협력 MOU 진행
 - 현장 실습 중심의 자격 연수 교육 과정 강화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발전 방안

- 청소년상담사 의무배치 기관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 현행 청소년상담사 배치(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배치 기준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을 둔다.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발전 방안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대상기관의 청소년상담사 의무배치 도입 고려

<보수교육 의무대상 기관>

-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5호)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 단체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Wee클래스·센터·스쿨 등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발전 방안

- 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기관의 협력필요
 - 청소년상담사의 정규인력 채용을 통한 고용안정성 확보
 - 청소년상담사 채용과정에 가산점 부여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수당 지급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시 교육비 지원 및 교육참여시간 출장 처리

감사합니다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토론문

박 지 현 서원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글

가족구조의 변화, 입시위주의 교육 및 4차 산업혁명 등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문화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도 단순한 대인관계, 학업 등에서 인터넷 중독, 자살·자해, 학교폭력 등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청소년 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인력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상담사의 양성과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이 시행되었고, 그 시도가 2003년에 시행된 제1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이다. 발표자의 발제문에 의하면, 2018년까지 청소년상담사가 19,598명이 양성되었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취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하는 청소년 문제에 따라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적인 역량은 지속적으로 계발되고 관리·지원될 필요가 있다(소수연, 조은경, 조은희, 박선우, 전환희, 이동형, 2016).

토론자는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의 발전방안이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을 꺾하고 더 나아가 현재를 살고 있는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중요성을 인지하며, 발표자의 발제문을 토대로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

□ 청소년상담사 실무요소를 확대한 자격기준

- 청소년 위기개입 증가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상담전문성 담보를 위하여 실무 중심의 연수로의 확대는 청소년상담사의 위기개입 및 상담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임.
- 청소년상담사 1급의 경우, 박사학위와 상담경력증명서 2년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 10

사례 이상 보고서 제출처럼, 실무요소를 확대할 수 있는 자격기준의 조정과 관리체계가 필요함.

□ 자격시험 기간의 변경

- 청소년상담사 3급의 경우,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를 수행하거나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함.
- 3급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상담관련분야의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상담관련 기관에 취업을 준비함. 청소년상담사 3급의 취득 여부는 대학생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게 됨.
- 하지만 현 체제의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은 연수가 졸업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위한 자격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청년 취업난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반기에 자격시험을 보고, 당해 연도에 연수를 실시하여 졸업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

2.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향상

□ 청소년상담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체계 구축

-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퍼비전은 주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임.
- 청소년상담사를 위한 보수교육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에,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학 및 상담관련기관에서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여부를 떠나 지역의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과 수퍼비전 기회 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공공기관 내 청소년 상담관련 상담서비스 모형 제공

- 최근, 학교 내 Wee-center, 보호교정시설 등의 공공기관 내에서 청소년상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내 청소년상담의 모형을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음.

3. 청소년상담사 인력 선발 및 처우개선

□ 청소년상담복지기관의 청소년상담사 지원을 위한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마련

-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발전 방안으로 채용과정에 가산점 부여, 자격증 수당 지급 및 보수교육 관련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함.

□ 청소년상담사의 근무형태 및 급여 안정화를 위한 노력

- 청소년상담사의 근무형태는 '정규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5.9%로 절반을 넘지 못

하였으며, 3급의 경우 ‘정규직’보다 ‘임시직’의 비율이 3.1% 더 높은 29.8%로 나타남(이창호, 이소엽, 조수연, 2011).

- 청소년동반자의 이직률이 타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최인화, 김현미, 김진희, 정민선, 박미진, 2015).
- 이에,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직에 대한 근무형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청소년상담기관의 청소년상담사의 매년 호봉 인상이 어려움. 이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함.

Ⅲ. 나가는 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청소년 상담에 대한 지식 및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됨으로써 효용성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성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자격제도 개선, 전문성 향상, 인력 선발 및 처우개선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조수연, 조은경, 조은희, 박선우, 전환희, 이동형 (2016).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유용성 척도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24(1), 104-129.
- 이창호, 이소엽, 조수연 (2011). 국가자격 청소년상담사 인력 현황 조사 연구 : 2003 ~ 2010년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최인화, 김현미, 김진희, 정민선, 박미진 (2015). 청소년상담자의 직무자원과 이직의도와와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직업몰입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1), 157-177.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토론편

배 영 태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 전반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현장실습 중심의 자격연수 교육과정 강화,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청소년상담사의 의무배치 기관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등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되어 몇 가지 부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상담사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상담실무 능력은 여타 상담관련 국가 자격증 소지자와 비교해보았을 때 매우 우수하다고 보여 집니다. 반면 상담관련 학회 자격증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는 상담 실무에 대한 훈련시간과 비례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의 경우, 접수면접 20회, 개인상담 10회기 이상 5사례, 10회 수퍼비전, 집단상담 2개집단, 심리평가 검사 및 해석 각 10사례, 수퍼비전 5사례, 공개사례발표 2사례를 최소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현장에서는 상담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사보다도 학회자격증 소지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제자께서 강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장실습중심의 자격연수 교육과정 강화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임상심리사의 경우 수련을 지원자격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상담사의 경우는 지원 자격으로 수련을 인정하기 보다는 자격시험 이후 연수에 실습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습 또는 기관은 시도,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유사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상담사의 의무배치 기관 확대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들은 18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연령과는 10년이라는 기간이 겹치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의 지원자격을 보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 자격증소지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또한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를 자격기준

으로 제시하고 있고, 법무부산하의 보호관찰소, 비행예방센터에서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는 포함되지만 청소년상담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다르고 법령이 다르다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국가가 배출한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발양보해서 의무배치는 아닐지라도 지원자격으로라도 포함되는 것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셋째, 처우개선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에 보수를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사가 종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담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상담사와 유사한 자격증을 채용기준으로 삼고 있는 타 기관과의 비교에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경우 대부분이 석사학위 취득자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호봉 급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낮아 장기로 근무하는 경우 상대적 열악성이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별 종사자 기본급 비교〉

기관명	호봉/직위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	비고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호봉	2,280	2,058	1,980	1,708	명절휴가비 120% 시간외 가족수당
	10호봉	2,958	2,770	2,688	2,875	
해바라기센터	호봉/직위		부소장	정신건강 임상심리	간호사, 상담원, 임상심리	명절휴가비 100% 직책수당
	1호봉		2,705	2,595	2,200	- 부소장월100천원
	10호봉		3,182	3,029	2,581	- 팀장 월50천원
사회복지이용시설	호봉/직위	관장	부장	과장	선임복지사	명절휴가비 120% 시간외 가족수당
	1호봉	2,510	2,249	2,051	1,928	
	10호봉	3,549	3,200	2,922	2,66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호봉/직위	센터장		팀장	팀원	명절휴가비 120% 시간외/가족수당 기타제수당
	1호봉	2,191		1,984	1,857	
	10호봉	2,743		2,459	2,257	

※ 건강/다문화센터는 2018년 기준, 타기관은 2019 기준

※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선임복지사와 상담복지센터의 팀원을 비교함(상담센터의 경우 팀원의 대부분이 석사 이상 학력소지자임을 감안)

청소년기본법 제 23조 ③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사의 보수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규정을 갖는 것이 합당합니다. 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 지침인 청소년사업안내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책구성을 센터장, 팀장, 팀원, 행정원(시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4단계 구조는 승진의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센터장, 책임상담원(팀장), 선임상담원(팀장, 팀원), 상담원(팀원), 행정원(시도)로 4~5 단계로 구분하고, 보수체계는 센터장은 공무원 5~6급, 책임상담원은 6~7급, 선임상담원은 7~8급, 상담원은 8~9급으로 하되 공무원의 기본급을 보수 기준테이블로 정하고 제 수당은 지자체가 적의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상황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하나는 자격 수당입니다. 경북도 사회복지사의 경우 조례(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비 3 : 시군비 7로 예산이 편성되어 도내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전원에게 자격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의 경우 2019사업안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북도 21개 시군 중 2개 시군에서만 자격 수당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유명무실한 지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침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국가 자격증 제도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자격증의 남발을 막아 전문성과 희소성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후자의 조건을 충분히 잘 충족시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청소년상담사들에게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잘 완성되어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자하는 자격증 소지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격증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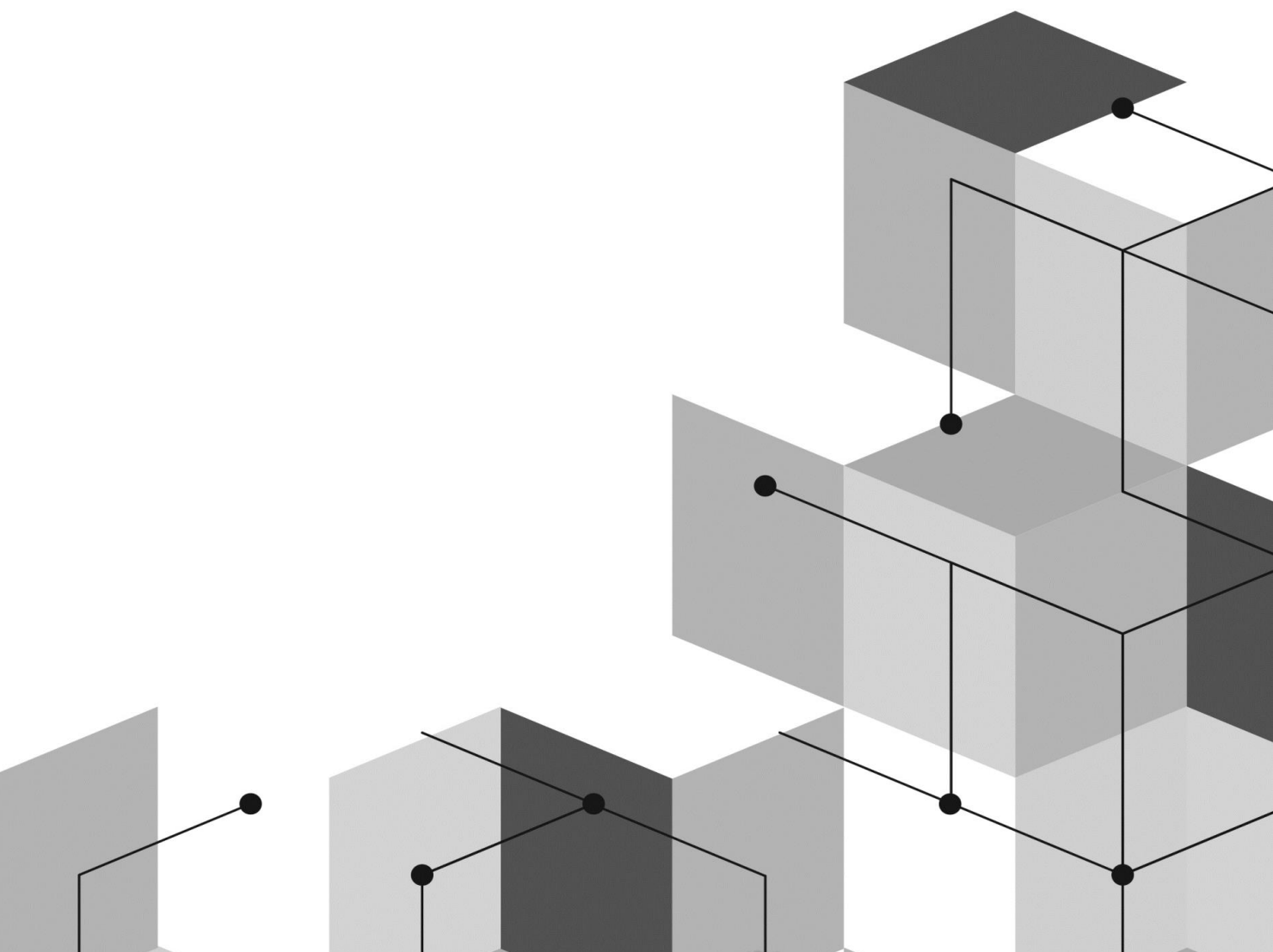
세션 2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발표 **최 창 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참여연구실장

토론 **유 성 렬** 백석대학교 교수

배 정 수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장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 개선방안

2019.09.19(목)

최창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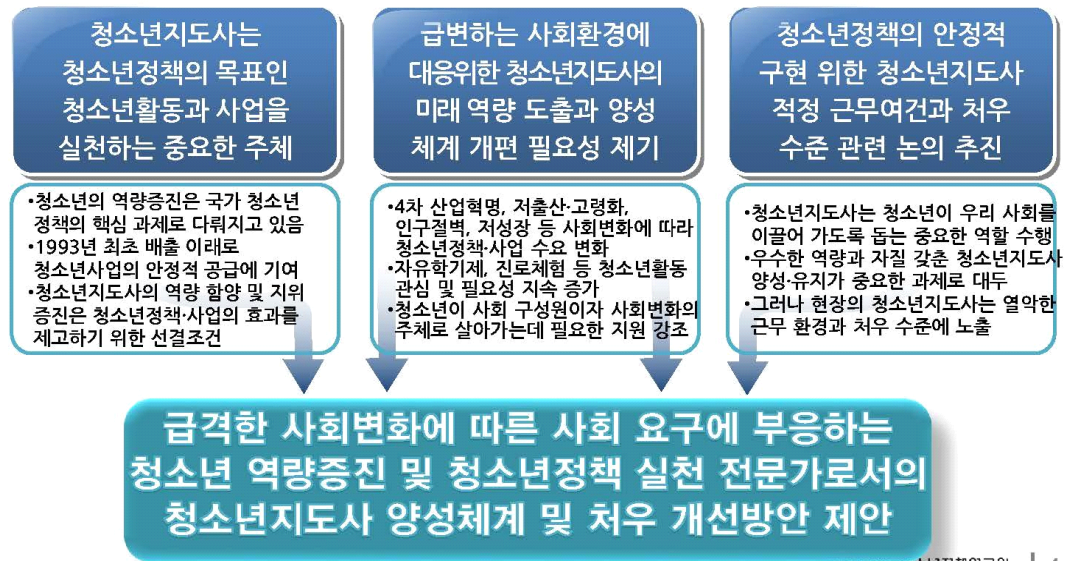
1. 서론
2. 청소년지도사 양성의 성과와 한계
3.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관련 인식조사 분석 결과
4.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편(안)
5.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관련 실태조사 분석 결과
6.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개선(안)
7. 결론 및 정책제언

I. 서론



I. 서론

제안배경



I. 서론

청소년지도사 양성 제도의 변화 과정



※ 취득현황 자료: 여성가족부(2019)

NYP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5

II. 청소년지도사 양성의 성과와 한계



II.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성과와 한계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성과

01

청소년지도사 양성 계획에 따라 1993년 부터 2018년 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1,730명, 2급 청소년지도사 35,425명, 3급 청소년지도사 12,691명 등 총 49,846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 배출(여성가족부, 2019)

02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제도의 지속적 개편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대학(2년제, 4년제), 대학원 및 학점인정(시간제) 등 청소년지도사 양성 기반 다양화

03

2005년 개정 자격검정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08년 자격검정 부터 매년 3~4천여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에게 자격이 부여되면서 큰 폭의 양적 성장 본격화, 청소년정책·사업의 토대 마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7

II. 청소년지도사 양성의 성과와 한계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한계점

검정과목 관련

- 2005년 개정 이후 검정과목이 1급 5과목, 2급 8과목, 3급 7과목으로 유지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사업 현장 변화 반영 어려움
- 2급과 3급이 1과목 제외한 동일 과목으로 운영되어 난이도 조절 어려움, 자격검정 과목의 동질성 확보 및 표준화된 교수요목 요구(학계, 한국산업인력공단)
- 유사자격(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대비 이수과목 학점 수 부족(사회복지사 2급 14과목 42학점 / 보육교사 2급 17과목 51학점 / 평생교육사 2급 10과목 30학점)
- 검정과목 이수 학점 기준 부재로 악용 사례 발생(1학점, 계절학기 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8

II. 청소년지도사 양성의 성과와 한계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한계점

현장실습 관련

-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이 함께 개설되는 유사 자격인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수 이수로 규정된, 현장실습과목이 의무 이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사회복지사의 경우, 현재 120시간 이상 운영 → 2020년 160시간 확대,
보육교사 실습 240시간, 평생교육사 160시간 의무 이수 규정
- 청소년 관련 전공이 개설된 대학에서는 학교 내 규정으로 일부 운영중
- 2016년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르면, 실습 운영 기관이 실습 참가자에게 '현장실습지원비' 지급하도록 규정. 별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해당 법령 우선적용 원칙이나,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은 관련 법적 근거 부재로 실습 기관의 부담 증가

II. 청소년지도사 양성의 성과와 한계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한계점

면접제도 관련

- 2018년 기준 2급 응시자 중 85%가 5분 내 이루어지는 면접시간으로 당락 결정되어 면접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지속
- 과거 필기시험 응시 후 면접시 필기시험에서 전문지식, 면접시험에서 태도와 기술적인 면을 평가, 필기시험 면제 이후 3~5분의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의 전문지식, 기술, 태도를 평가하고 있음

자격연수 관련

- 자격연수가 제도화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자격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누적 인원 약 2,300여 명은 시험 합격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10년 이상 이전 법, 정책 하의 제도에서의 합격자도 30시간 연수과정을 수료할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또한, 자격연수 후 결격사유 조회시 결격사유 해당자(복권이 되지 않음, 형 집행 미종료 등)가 연수에 참여하는 사례도 발생

Ⅲ.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관련 인식조사 분석 결과



Ⅲ.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관련 인식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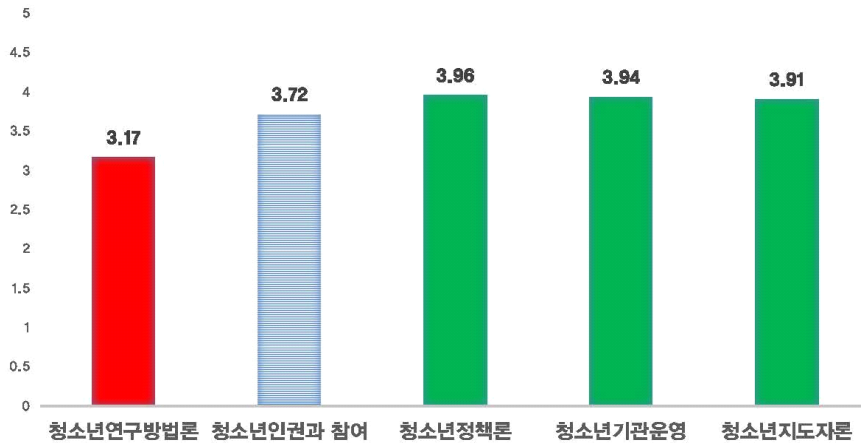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 인식조사 – 조사 개요

조사주제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조사대상/방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전문가패널단(1,400명) 中 지역할당(거주지역 비율) 303명 / E-mail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방법	• 2019년 7월 15일 ~ 30일
조사내용/방법	• 자격검정 이수 및 응시 과목 관련 인식 • 자격연수, 보수교육, 현장실습(운영여부, 의무화 관련) 등 인식

Ⅲ.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관련 인식조사 분석 결과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 인식조사 – 자격검정 이수 및 응시 과목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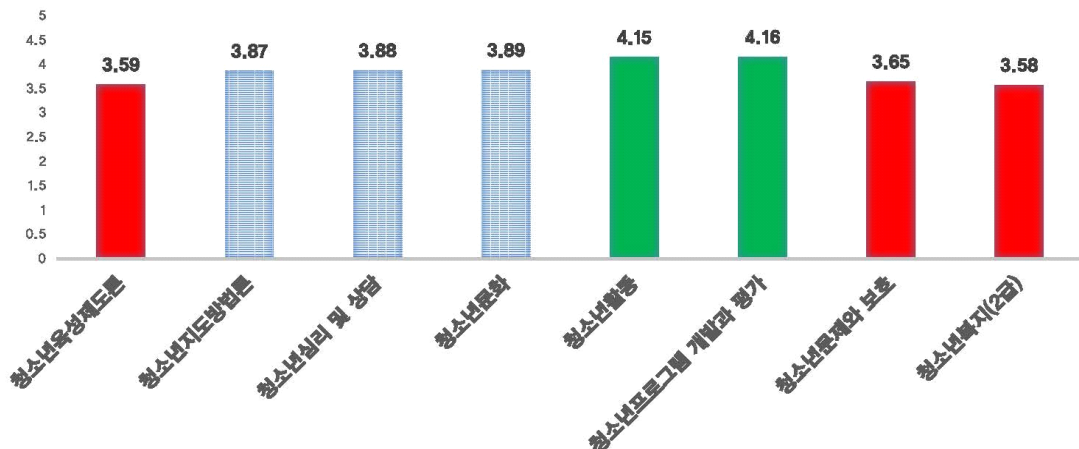
1급 청소년지도사 과목별 도움정도



Ⅲ.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관련 인식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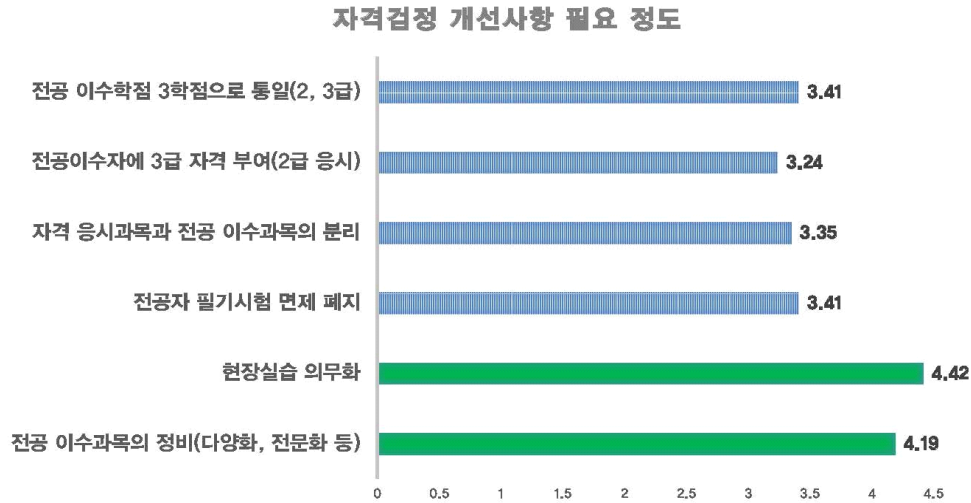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 인식조사 – 자격검정 이수 및 응시 과목 관련 인식

2·3급 청소년지도사 과목별 도움정도



III.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관련 인식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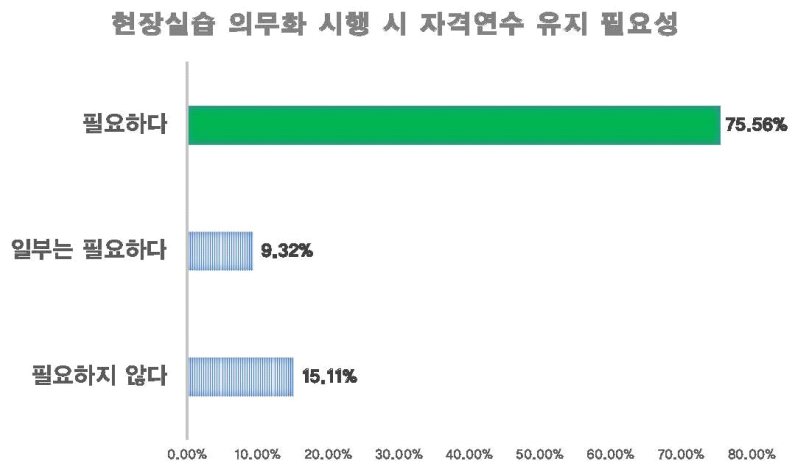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 인식조사 – 자격검정 개선사항의 필요 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5

III.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관련 인식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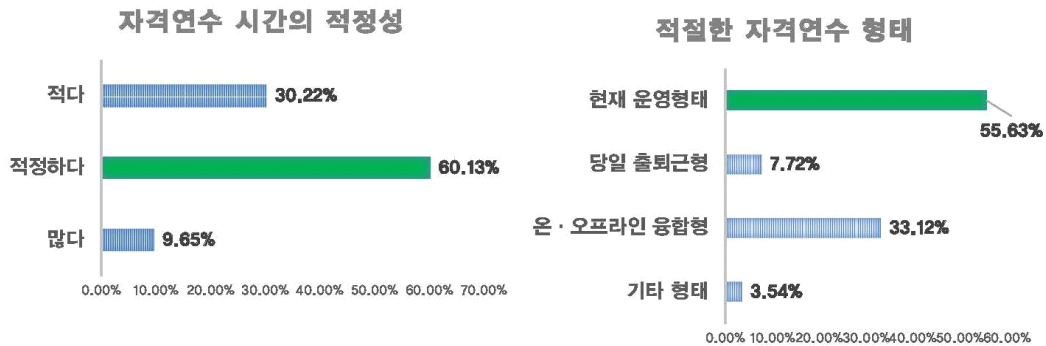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 인식조사 – 자격연수 필요 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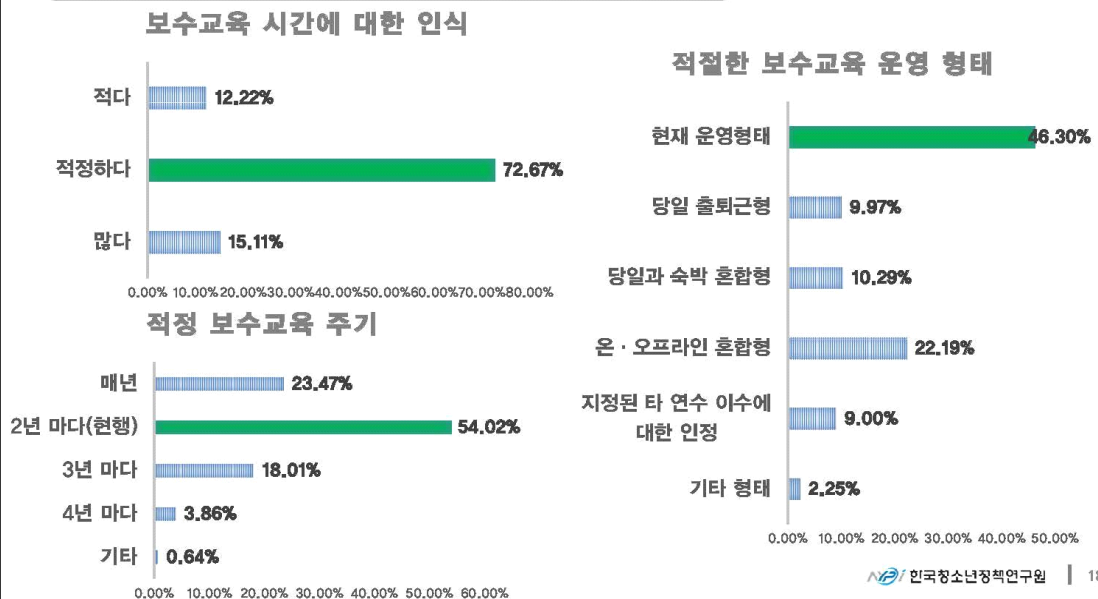
III.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관련 인식조사 분석 결과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 인식조사 – 자격연수의 적정성



III.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관련 인식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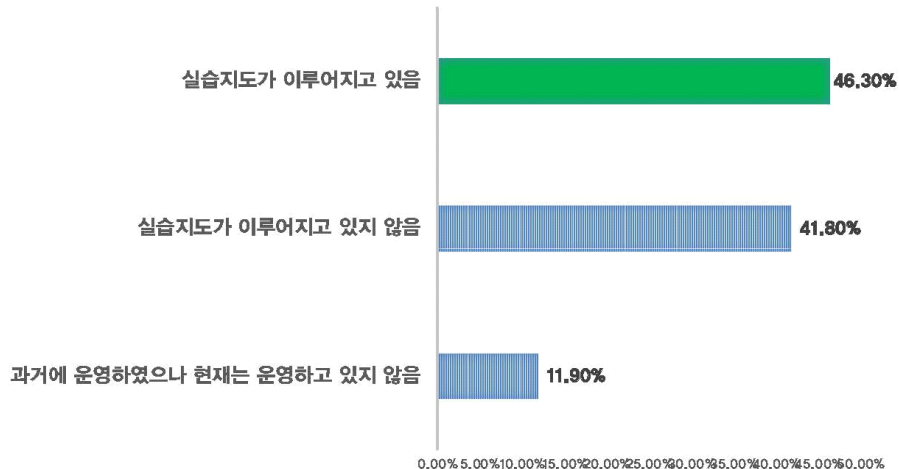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 인식조사 – 보수교육 관련 인식



III.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관련 인식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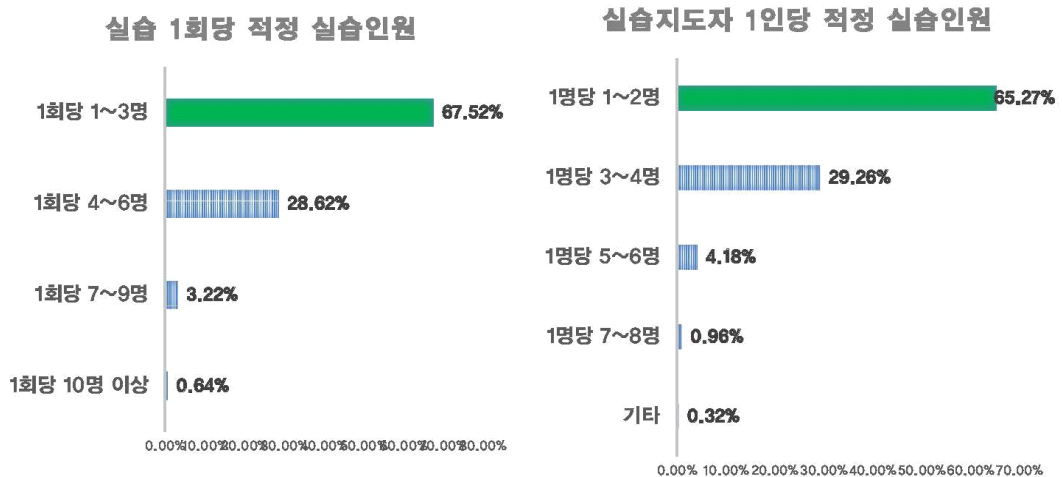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 인식조사 – 현장실습 관련 인식

소속기관의 실습 운영 여부



III.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관련 인식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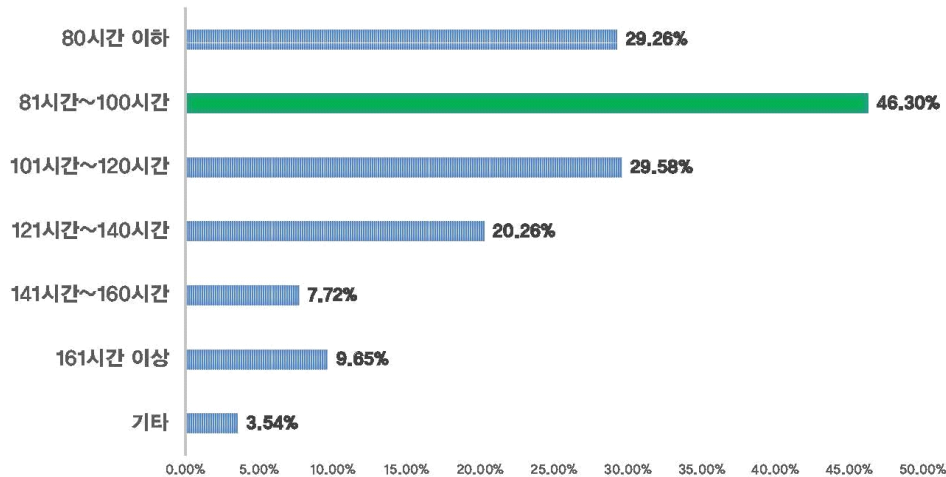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 인식조사 – 현장실습 관련 인식



III.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관련 인식조사 분석 결과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 인식조사 – 현장실습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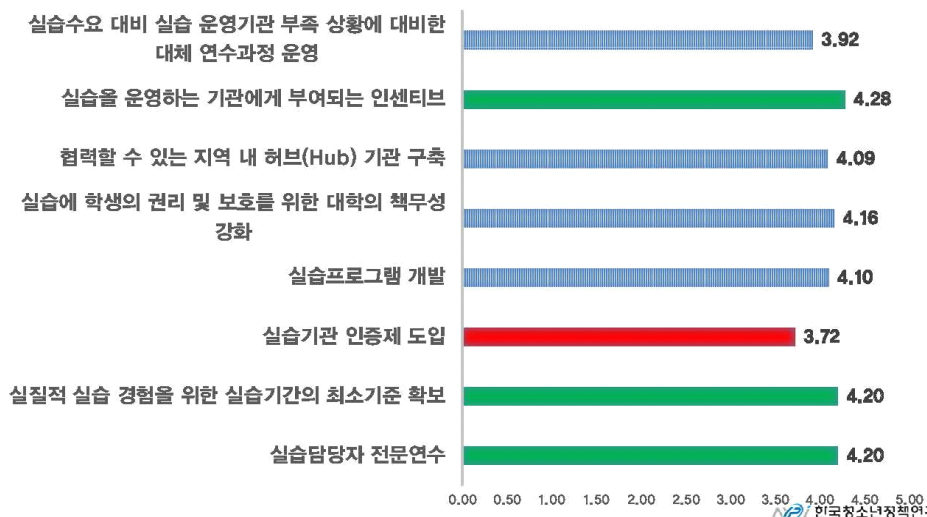
실습 1회당 적정 실습시간



III.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관련 인식조사 분석 결과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 인식조사 – 현장실습 관련 인식

현장실습 의무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Ⅳ.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편방안(안)



Ⅳ.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편방안(안)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편 전략

01

저출생·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청소년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저성장 고착 등 급격한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

02

청소년, 가족, 사회의 요구 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 및 사업 현장 유형 다양화에 대응

03

청소년지도사 1·2·3급 자격 급수별 차별화 방안 모색

IV.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편방안(안)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편(안)의 주요 초점

01

현장실습 의무화(2급) 및 자격 급수별
시험/면접/연수 적용방안 검토

02

청소년지도사 자격 급수 구분
명확화 · 현실화(3급제/2급제 검토)

03

청소년 관련 교과목 이수율 기준으로
하는 자격검정 개편(학점 기준(3학점) 포함)

04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유목화
(기초/실천/정책 · 제도) 및 필수과목 검토

IV.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편방안(안)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편(안)

구분	A	B	C	D
주요 특징	· 1·2·3급 자격검정 시험 실시 (2005년 개정 이전 방식)	· 자격 급수 구분 축소 (1·2·3급 → 1·2급) · 실습 의무화(160시간) - 1급: 2급 조건충족후 시험 - 2급: 과목이수+실습(160시간) + 면접	· 2·3급 현행 시험면제 유지 · 2급 실습 의무화(160시간) · 자격 급수별 과목수 조정 (2급 확대, 3급 축소)	· 1·2급 시험 실시, 1급 연수 폐지 · 2급 면접 폐지, 3급 시험 폐지 · 2급 실습 의무화(160시간) - 1급: 시험(연수 폐지) - 2급: 과목이수+실습(160시간) +시험(6개 이하)+연수(선택) - 3급: 과목이수+면접+연수
응시자격 및 과목이수 (3학점)	1급 (현행 유지) 2급 (현행 유지) 3급 (현행 유지)	2년제(전문학사) 이상 2년제(전문학사) 이상 (폐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과목 확대(10개 이상) (현행 유지) 과목 축소(5개~6개 이하)	(현행 유지) 2년제(전문학사) 이상 과목 확대(10개 이상) 2년제(전문학사) 이상 과목 확대(10개 이상)
시험 실습(160시간)	1급, 2급, 3급 2급 선택과정	1급 전면 의무화	1급 2급 의무과정	1급, 2급 2급 의무과정
자격연수	실습 미이수시 연수 수료 의무	-	1급, 3급 의무과정	2급 선택, 3급 의무과정
장점	· 시험 대비 학습 유도를 통한 기본 역량(자질) 제고 · 실습-연수이수 선택 적용	· 자격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제도 개선(간소화) · 사회복지사 등 타 자격과의 형평성 확보	· 현행 양성체계 유지하면서 현장실습 의무화를 통한 현장 이해도, 전문성 제고 · 자격 급수별 역할 명확화	· (2급)현장실습 의무화에 따른 현장 적응도 및 전문성 제고 · 1·2·3급 구분 명확화
단점	· 시험 실시로 인한 응시인원 감소, 양적 확대 둔화 예상	· 기존 2·3급 취득자의 1급 자격 인정기준 마련 필요 (경력인정, 경과기간 내 시험, 연수 수료 등)	· 과목 추가·개편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적용 필요	· 시험 실시로 인한 2급 취득 인원 감소 우려 · 안정적 실습 운영체계 구축 필요

IV.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편방안[안]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편 - (A안)

※ 주요 특징: 1·2·3급 자격검정 시험 실시 (2005년 개정 이전 방식)

응시자격/과목이수	• 1·2·3급 현행 유지 (1급-5개, 2급-8개, 3급-7개 과목 유지)
시험 운영	• 1급, 2급, 3급 급수별 시험 운영
실습(160시간)	• 2급 응시자 선택과정 (실습 선택시 연수 면제)
자격연수	• 실습 160시간 미이수시 연수 수료 의무
장점	• 시험 대비 학습 유도를 통한 기본역량(자격) 제고
단점	• 시험 실시로 인한 응시인원 감소, 양적확대 둔화 예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7

IV.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편방안[안]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편 - (B안)

※ 주요특징: 자격급수 구분 축소(1·2·3급→1·2급) / 실습 의무화(160시간) - 1급: 2급 자격 조건(과목이수+실습) 충족 후 시험 응시/합격 - 2급: 과목이수+실습(160시간)+면접 응시/합격

응시자격/과목이수	• 1·2급: 2년제(전문학사) 이상 (2급-8개 과목이수 유지)
시험 운영	• 1급 시험 운영
실습(160시간)	• 응시자 전면 의무화
자격연수	• 실습 의무화에 따른 폐지
장점	• 자격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1급, 3급)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제도 개선(간소화) • 사회복지사 등 타 자격과의 형평성 확보
단점	• 기존 2급·3급 취득자의 1급 자격 인정기준 마련 필요(경력인정, 경과기간 내 시험, 연수수료 등)

| 28

IV.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편방안(안)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편 - (C안)

※ 주요 특징: 2·3급 현행 시험면제 유지 / 2급 실습 의무화(160시간)
자격 급수별 과목 수 조정: 2급 확대, 3급 축소

응시자격/과목이수	1급: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현행유지 2급: 응시자격 현행유지, 이수(시험)과목 10개 이상 3급: 응시자격 현행유지, 이수(시험)과목 5~6개 이하
시험 운영	1급 시험 운영
실습(160시간)	2급 응시자 의무화
자격연수	1급, 3급 의무과정으로 운영
장점	- 현행 양성체계를 유지하면서 2급 현장실습 의무화를 통한 현장 이해도, 전문성 제고 - 자격 급수별 역할 명확화
단점	과목 추가·개편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적용 필요

2024년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편방안 | 29

IV.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편방안(안)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편 - (D안)

※ 주요특징: 1·2급 시험/1급 연수 폐지/2급 면접 폐지, 실습 의무/3급 시험 폐지
- 1급: 시험(연수 폐지)
- 2급: 과목이수+실습(160시간)+시험(6개 이하)+연수(선택)
- 3급: 과목이수+면접+연수

응시자격/과목이수	1급: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현행유지 2급: 2년제(전문학사)이상, 이수과목 확대(10개 이상)-일부과목 시험 3급: 2년제(전문학사)이상, 이수과목 확대(10개 이상), 시험폐지
시험 운영	1급, 2급 시험 운영
실습(160시간)	2급 응시자 의무화
자격연수	2급 선택, 3급 의무과정으로 운영
장점	2급 현장실습 의무화에 따른 현장 적응도 및 전문성 제고 1·2·3급 자격구분 명확화
단점	- 시험 실시로 인한 2급 취득인원 감소 우려 - 안정적 실습 운영체계 구축 필요

| 30

IV.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편방안[안]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개선 방향: 후속연구 검토 필요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1

V.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관련 실태조사 분석 결과



V.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관련 실태조사 분석 결과

내용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현황 조사
 - 전국 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및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대상 보수체계 현황 조사
- 유사 업무 직업 보수체계 비교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현재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수준 분석
 - 유사업무 직업 보수체계 조사 및 청소년지도사와의 비교 분석
- 2019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표준(안) 개발
 - 청소년지도사 표준임금표(안)를 개발하여 제시
 -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당 체계도 가능한 범위에서 간소화하여 제시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개선방안 제시
 - 보수체계 현황조사, 타 직업군 사례,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제시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란?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보수 구성체계
- 기본급 + (최저임금 산입)법정 수당
(※ 시설, 직급, 직위, 지역, 운영주체별 복잡 · 다양하여 전체 포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3

V.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관련 실태조사 분석 결과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관련 실태조사 -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

- 전국 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453개 전체

조사기간

- 2018년 7월 3일 ~ 20일

조사내용/방법

- 시설유형, 운영주체, 직위, 직급, 기본급, 수당 등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협조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대상

- 249개 시설, 2,778명의 종사자 응답 활용

[표] 분석대상 시설 및 종사자 수

구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전체 시설 수	전체 종사자 수
	시설 수	종사자 수	시설 수	종사자 수		
총합계	125개소	638명	124개소	2,141명	249개소	2,779명

※청소년특화시설 7개소(종사자 107명)는 청소년수련관으로 포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4

V.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관련 실태조사 분석 결과

시설유형/운영주체별 기본급 평균 현황

- 청소년문화의집 기본급: 청소년단체 > 학교법인

- 청소년수련관 기본급: 지방자치단체 설립법인 > 청소년단체

[그림]시설유형/운영주체별 기본급 평균현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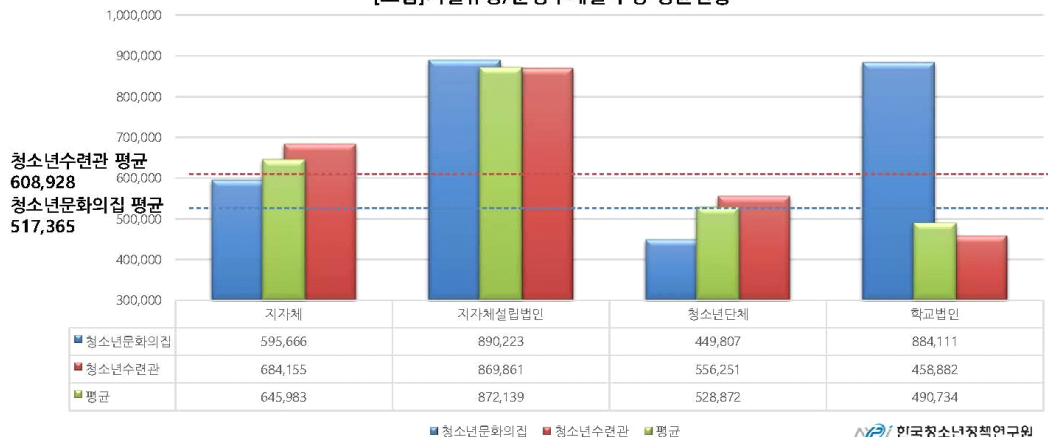
V.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관련 실태조사 분석 결과

시설유형/운영주체별 수당 평균 현황

- 청소년문화의집 수당: 지방자치단체 설립법인, 학교법인 >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단체

- 청소년수련관 수당: 지방자치단체 설립법인 >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단체 > 학교법인

[그림]시설유형/운영주체별 수당 평균현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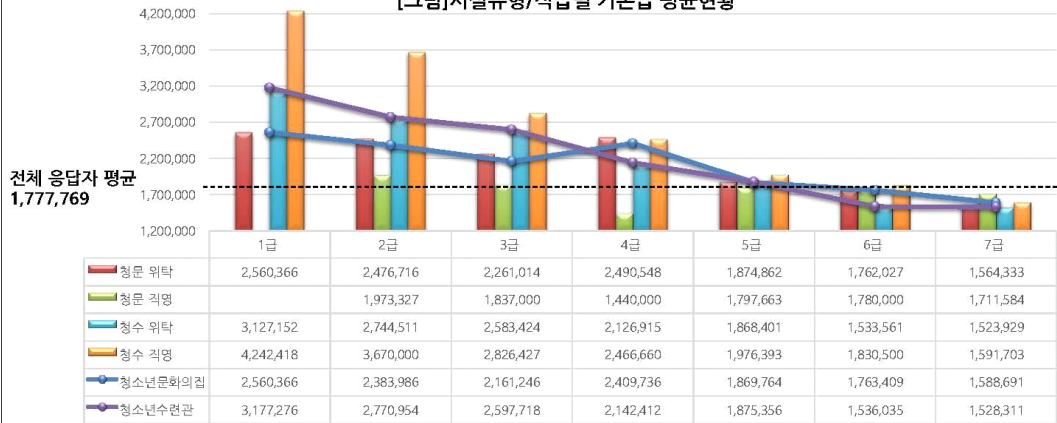
V.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관련 실태조사 분석 결과

시설유형/직급별 기본급 평균 현황

시설 유형별 기본급 평균은 청소년수련관(1,781,567원)이 청소년문화의집(1,765,022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1급: 문화의집 2,560,366원 < 수련관 3,177,276원 / 7급: 문화의집 1,528,311원 < 수련관 1,588,691원

[그림] 시설유형/직급별 기본급 평균 현황



※ 직급이 없는 종사자는 7급으로 처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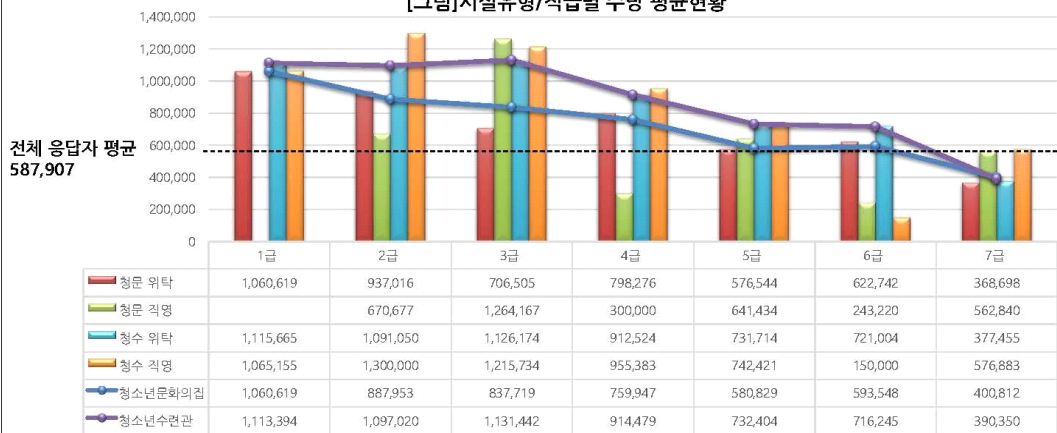
V.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관련 실태조사 분석 결과

시설유형/직급별 수당 평균 현황

시설 유형별 수당 평균은 청소년수련관(608,928원)이 청소년문화의집(517,365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1급: 문화의집 1,060,619원 < 수련관 1,113,394원 / 7급: 문화의집 400,812원 > 수련관 390,350원

[그림] 시설유형/직급별 수당 평균 현황



※ 직급이 없는 종사자는 7급으로 처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8

V.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관련 실태조사 분석 결과

직위/직급별 기본급 및 수당 평균 현황

- 1급 관장의 경우 기본급 평균은 3,037,801원, 수당 평균은 1,101,463원

- 7급 사원의 경우 기본급 평균은 1,544,077원, 수당 평균은 393,081원

[표] 직위/직급별 기본급 평균현황

구분(단위: 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평균
관장	3,037,801	2,383,986						2,875,415
실국장		2,770,954	2,161,246					2,571,626
부차장			2,597,718	2,409,736				2,567,548
팀과장				2,142,482	1,869,764			2,067,784
대리					1,889,821	1,763,409		1,873,917
사원				2,137,484	1,712,028	1,536,035	1,544,077	1,546,569
평균	3,037,801	2,569,519	2,510,423	2,154,074	1,873,878	1,567,819	1,544,077	1,777,769

[표] 직위/직급별 수당 평균현황

구분(단위: 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평균
관장	1,101,463	887,953						1,048,434
실국장		1,097,020	837,719					1,012,249
부차장			1,131,442	759,947				1,071,819
팀과장				913,958	580,829			822,714
대리					741,848	593,548		723,191
사원				951,027	625,763	716,245	393,081	440,618
평균	1,101,463	988,191	1,072,697	907,737	692,337	699,094	393,081	587,907

39

V.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관련 실태조사 분석 결과

직급별 공무원/사회복지/청소년수련시설 기본급 비교(2017년 기준)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월 평균 기본급은 공무원 대비 1,309,363원, 사회복지시설 대비 1,365,831원 낮음

[표] 직급별 일반공무원,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기본급 평균현황 비교

구분(단위: 원)	3급/ 관장	4급/ 사무국장	5급/ 1급	6급/ 2급	7급/ 3급	8급/ 4급	9급/ 5급	월 평균
①일반직공무원	4,471,770	3,964,979	3,653,257	3,161,513	2,862,510	2,577,161	2,343,935	3,290,732
②사회복지시설	3,660,185	3,474,607	3,407,067	3,125,871	2,860,968	2,692,742	2,567,419	3,112,694
③청소년수련시설	3,037,801	2,569,519	2,510,423	2,154,074	1,873,878	1,567,819	1,544,077	1,777,769
(③-①) 공무원 대비 차액	-1,433,970	-1,395,460	-1,142,833	-1,007,439	-988,632	-1,009,342	-799,858	-1,512,964
(②-①) 사회복지시설 대비 차액	-622,385	-905,088	-896,643	-971,797	-987,090	-1,124,923	-1,023,342	-1,334,926

※자료: 일반직공무원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2017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 2017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V.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관련 실태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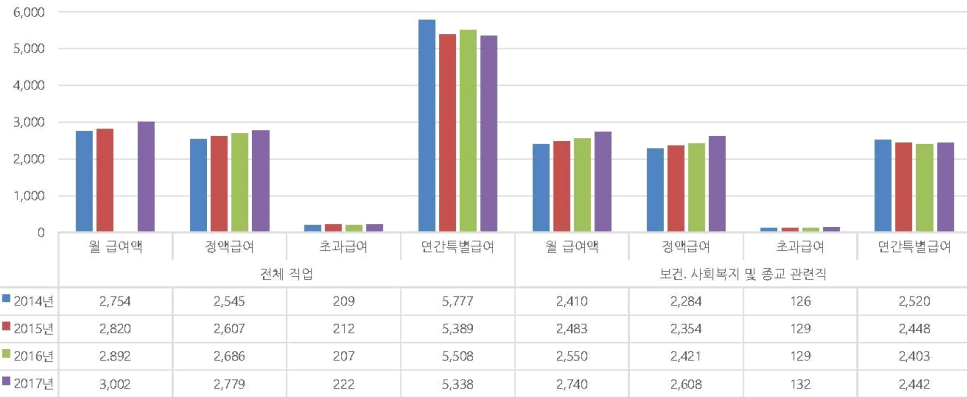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월 급여 수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청소년지도사: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중분류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소분류 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월 급여 - 전체 직업의 90% 내외 수준

[그림] 전체직업과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월 급여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1

V.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관련 실태조사 분석 결과

청소년지도사의 월 급여 수준

통계청 승인통계,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현황 통계 편람」에서도 청소년지도사의 임금 수준은 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선행연구 자료를 토대로 이를 검토하였음

맹영임, 길은배, 전명기(2010): 월 평균 급여 175만원, 청소년수련관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

황진구(2014)의 연구 결과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액 평균은 214만원

본 연구의 조사 결과 2018년 기본급과 수당 포함한 청소년지도사 월 평균 급여액은 237만원

[표] 청소년지도사 월 급여 조사 결과

구분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월 급여	유형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맹영임 외(2010)	1,545명	우편조사	'10. 7-8.	175만원	178만원	171만원	168만원
황진구(2014)	884명	온라인조사	'14. 6.	214만원	238만원	201만원	226만원
황진구(2017)	171명 ¹⁾	팩스조사	'17. 10-11.		194만원		
본 연구(2018)	2,779명	온라인조사	'18. 7.	237만원	239만원	-	228만원

1) 2017년 조사 대상은 청소년지도사 중 정부로부터 배치지원을 받는 청소년지도사로 한정된 결과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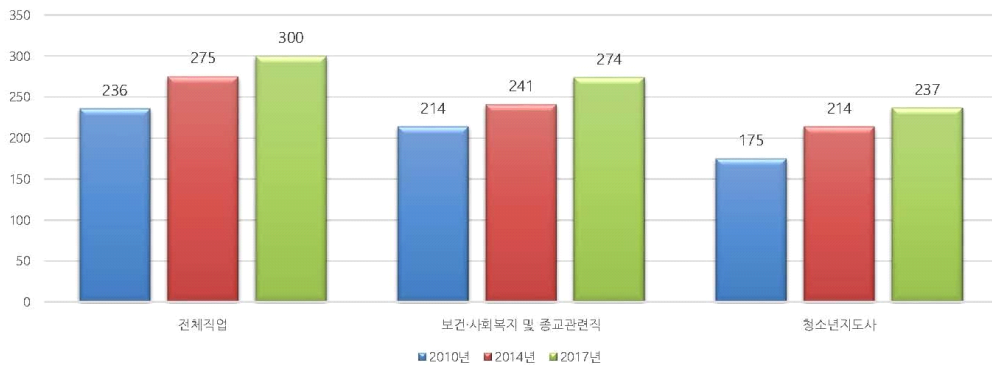
V.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관련 실태조사 분석 결과

다른 직업과 청소년지도사 임금수준 비교

- 선행연구 연도(2010, 2014)와 본 연구 시점(2017)의 전체직업,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월 평균 급여액 비교

- 전체 직업과 청소년지도사의 임금 차이는 2010년 74.1% 수준에서 2014년 77.8%, 2017년 79.0%로 나타남

[그림] 전체 직업 및 청소년지도사 월 평균 보수 비교



※자료: 고용노동부(2010, 2014, 201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pp.98-99.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결과는 맹영임 외(2010), 황진구(2014), 본 조사(2018)의 결과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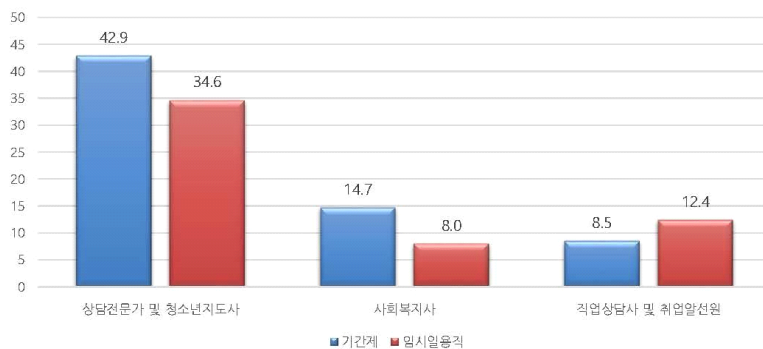
III. 타 직종과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비교

다른 직업과 청소년지도사 임금 수준차이 발생 원인

- 「한국직업전망」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위별 임금수준 중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와 동일 직업군(사회복지관련직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과 비교

- 상담 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의 기간제 및 임시·일용직 비율이 2배 이상:
동일 직업군 내 다른 직업에 비해 청소년지도사의 급여가 낮은 이유를 설명

[그림] 청소년지도사 관련 직업 기간제 및 임시일용직 비율 비교(%)



※자료: 이시균, 황규성, 박세경(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4

V.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관련 실태조사 분석 결과

제도적 측면



사회 복지사

-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시·도 단위에서 임금 책정
-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급여 수준에 준하는 임금 지급에 대한 법적 보장

- 공공영역에서 근무 중인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
- 2007년 이후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직업상담직렬 신설
- 특별채용 시험을 거쳐 공무원으로 전환
- 이후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에서 직업상담직렬로 직업상담원 채용



직업 상담원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신분·처우 보장 미흡

VI. 보수체계 개선(안):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



VI. 보수체계 개선(안):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

주요 방향

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이행과 방향을 고려, 사회복지사 등 타 직종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 수준 최저기준 제시

②

청소년재단, 공단, 법인 등은 현행 자체 보수기준표 활용, 최저임금 미 충족 시설의 경우 지자체 재량(수당 등) 법적 요건 구비

③

기본급은 2018년도 사회복지공무원 기본급에 공무원임금 예상인상을 적용

④

수당은 복잡한 수당체계를 10종의 수당으로 간소화하고 각각의 지급기준 제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7

VI. 보수체계 개선(안):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수체계 개선(안) 마련 취지

국가 표준보수기준표 부재 극복 및 현장요구 반영

- 과거 국가청소년위원회 기준 적용 → 청소년지도사 보수의 누진적 하락 초래
- 현실을 반영한 국가 표준보수기준표 정립 필요
- 지자체와 청소년정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표준보수기준표 마련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이행

- 중점과제인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의 실행과제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천명
-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기준표 마련, 지자체 청소년정책 성과평가 지표에 보수기준표 적용 여부 반영하겠다는 취지 이행

사회복지사 등 유사직업과의 비교

- 정부와 지자체, 사회복지사 등의 노력으로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통해 보수체계 개선
- 사회복지사 등과 비교 시 비슷하거나 많은 업무량을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열악한 보수체계, 복지수준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 국가정책에 부응

- 2018년부터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청소년수련시설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함
- 2019년도 최저임금도 10.9% 인상되어 반영 필요성 강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8

VI. 보수체계 개선(안):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

2019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최저기준 안)

1안) 2019년 공무원 기본급 대비 급수 및 호봉별 차등

- '19년도 일반직 공무원 기본급 기준, 급수별 및 호봉별 차등 적용
 - 유사직종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책정기준 고려
 - 하후상박(下厚上薄)적용: 재정적 부담이 높은 시기인 평균초혼연령, 2019년도 최저임금 등 고려, 4급 10~14호봉을 일반직 공무원 100% 기준으로 임금격차 축소 및 좋은 일자리 확대
- ※ 초혼연령 남자 32.9세, 여자 30.2세 (통계청 | 2017년 혼인·이혼 통계)

[표] 2019년도 공무원 기본급 기준 대비 급수/호봉별 적용기준

급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적용율	80%~84%	85%~90%	90%~98%	98%~100%	99%~103%	103%~108	110%~115%

2안) 2019년 공무원 기본급(2018년도에서 1.8% 인상) 대비 98% 일괄적용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준용: 2019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최저월급 1,745,150원(2019시간 기준)을 준수

- ★ 1안) 7급 1호봉, 2안) 6급 1~2호봉, 7급 1~5호봉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 기준 충족 위해 최저임금 산입 임금 별도 추가포함 필요

VI. 보수체계 개선(안):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직급은 1급~7급, 직위는 관장~사원으로 분포.
시설 규모별 업무량 및 난이도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규모(수용정원) 기준으로 직위 차등 적용

공무원과의 비교: 급여수준 고려 9급부터 3급 까지 비교직급 설정(관장의 경우 교수, 계장 등이 부임)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직급과 유사한 장애인시설을 비교기준으로 적용

직급 및 직위 비교표는 실태조사 결과 정규분포를 고려하여 300명과 700명을 기준으로 분류.
지역 특성에 따라 유기적으로 반영

[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 이용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고 (승급기간)
		급수	수용정원 700명 이상	수용정원 699~300명	수용정원 300명 미만	
3급	관장	1급	관장			
4급	사무국장	2급	실(국)장	관장, 원장		4년
5급	1급	3급	부(차)장	부(차)장	관장, 원장	4년
6급	2급	4급	팀(과)장	팀(과)장	팀(과)장	4년
7급	3급	5급	대리/주임	대리/주임	대리/주임	4년
8급	4급	6급	사원	사원	사원	2년
9급	5급	7급	사원	사원	사원	2년

VI. 보수체계 개선(안):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2019년 보수체계의 활용

최저기준이라는 적용기준 명시

- 제시된 2019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는 최저기준 권고사항임
- 재단 및 공단, 법인 등 자체 보수기준표 보유 기관은 자체 보수기준표에 따라 현행처럼 지급
- 권고 보수체계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권고사항 준수

기본급과 수당의 관계 설정 유의

- 기관별, 지역별, 시설별, 운영주체별 수당이 다양하고 기본급과 수당의 비율도 상이
- 수당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임금 산입 가능 수당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수체계 안을 상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VI. 보수체계 개선(안):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최저 기본급 권고기준(1인)

- 원단위 절사
- 7급 1호봉의 기본급은 2019년
최저임금 기준 충족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 별도 추가 포함 필요
- 2019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최저월급 1,745,150원(2019시간 기준)
준수(2019.1.1.~2019.12.13.)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564,460	2,335,270	2,209,690	2,005,150	1,872,160	1,733,990	1,696,110
2	2,659,420	2,430,710	2,299,020	2,098,380	1,957,510	1,818,190	1,761,200
3	2,757,070	2,527,620	2,391,640	2,194,730	2,028,120	1,907,070	1,828,860
4	2,855,530	2,626,790	2,488,030	2,293,090	2,122,200	1,997,700	1,917,290
5	2,992,480	2,759,420	2,615,630	2,394,270	2,197,830	2,072,370	1,992,730
6	3,094,730	2,862,110	2,717,620	2,498,380	2,296,640	2,168,080	2,085,790
7	3,198,210	2,965,770	2,821,190	2,602,690	2,396,270	2,264,120	2,178,390
8	3,301,940	3,069,950	2,926,060	2,707,400	2,496,310	2,356,270	2,267,780
9	3,406,580	3,174,400	3,031,200	2,812,420	2,591,520	2,444,330	2,353,250
10	3,554,490	3,316,880	3,171,660	2,940,280	2,682,520	2,503,570	2,413,940
11	3,660,420	3,423,430	3,271,590	3,034,650	2,768,270	2,583,530	2,491,700
12	3,770,360	3,523,590	3,368,150	3,127,500	2,852,480	2,661,560	2,569,000
13	3,872,530	3,617,470	3,459,740	3,214,940	2,932,470	2,736,590	2,643,110
14	3,967,280	3,704,980	3,545,250	3,297,500	3,008,960	2,808,100	2,715,060
15	4,104,040	3,830,880	3,665,300	3,343,040	3,051,450	2,849,540	2,758,950
16	4,186,590	3,909,440	3,742,080	3,416,510	3,119,960	2,915,290	2,824,950
17	4,263,220	3,982,450	3,814,220	3,486,750	3,185,620	2,976,690	2,889,350
18	4,334,450	4,050,630	3,882,390	3,553,170	3,248,430	3,036,400	2,949,360
19	4,400,360	4,114,320	3,946,670	3,616,050	3,307,480	3,093,580	3,008,340
20	4,515,800	4,221,230	4,049,870	3,675,310	3,330,240	3,117,830	3,037,120
21	4,573,600	4,277,500	4,107,100	3,732,360	3,383,450	3,169,420	3,089,640
22	4,627,140	4,330,230	4,160,880	3,785,970	3,433,740	3,219,010	3,140,140
23	4,676,560	4,379,790	4,211,690	3,836,260	3,482,220	3,266,090	3,188,180
24	4,722,650	4,426,360	4,259,060	3,884,230	3,528,470	3,311,600	3,234,430
25	4,817,290	4,519,340	4,349,720	3,890,190	3,536,030	3,354,690	3,248,740
26	4,853,900	4,555,890	4,392,370	3,932,690	3,577,430	3,396,640	3,288,130
27	4,887,900	4,589,610	4,427,770	3,973,200	3,612,550	3,431,450	3,322,090
28		4,621,860	4,461,810	4,007,120	3,645,170	3,465,110	3,354,930

VI. 보수체계 개선(안):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최저 기본급 권고기준(2안)

- 원단위 절사
- 6급 1, 2호봉, 7급 1~5호봉의 기본급은
2019년 최저임금 기준 충족을 위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별도 추가
포함 필요
- 2019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최저월급 1,745,150원(2019시간 기준)
준수(2019.1.1.~2019.12.13.)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3,141,460	2,692,430	2,406,100	1,984,900	1,781,280	1,588,140	1,445,380
2	3,257,790	2,802,470	2,503,370	2,077,180	1,862,490	1,665,260	1,500,850
3	3,377,410	2,914,200	2,604,230	2,172,560	1,948,590	1,746,660	1,572,180
4	3,498,020	3,028,530	2,709,190	2,269,930	2,038,970	1,829,670	1,648,200
5	3,620,530	3,144,460	2,816,830	2,370,090	2,132,550	1,915,960	1,728,210
6	3,744,240	3,261,480	2,926,670	2,473,150	2,228,420	2,004,450	1,808,920
7	3,869,440	3,379,600	3,038,210	2,576,400	2,325,100	2,093,240	1,889,230
8	3,994,950	3,498,320	3,151,140	2,680,060	2,422,170	2,178,440	1,966,740
9	4,121,550	3,617,340	3,264,370	2,784,010	2,514,550	2,259,850	2,040,870
10	4,248,050	3,736,260	3,378,500	2,881,480	2,602,840	2,336,670	2,112,200
11	4,374,650	3,856,270	3,484,950	2,973,960	2,686,040	2,411,290	2,180,240
12	4,506,040	3,969,110	3,587,810	3,064,950	2,767,750	2,484,120	2,247,880
13	4,628,150	4,074,860	3,685,380	3,150,640	2,845,360	2,554,150	2,312,720
14	4,741,380	4,173,420	3,776,460	3,231,550	2,919,590	2,620,900	2,375,680
15	4,845,730	4,266,200	3,862,360	3,309,270	2,990,420	2,685,140	2,435,830
16	4,943,200	4,353,700	3,943,270	3,382,000	3,057,560	2,747,100	2,494,100
17	5,033,690	4,435,000	4,019,290	3,451,530	3,121,910	2,804,960	2,550,960
18	5,117,790	4,510,920	4,091,120	3,517,280	3,183,460	2,861,230	2,603,940
19	5,195,600	4,581,860	4,158,860	3,579,530	3,241,330	2,915,100	2,656,010
20	5,268,430	4,648,100	4,222,210	3,638,190	3,296,600	2,966,480	2,705,790
21	5,335,870	4,710,050	4,281,870	3,694,660	3,349,270	3,015,560	2,752,580
22	5,398,330	4,768,120	4,337,930	3,747,730	3,399,050	3,062,750	2,797,580
23	5,455,990	4,822,690	4,390,910	3,797,510	3,447,040	3,107,540	2,840,380
24	5,509,760	4,873,970	4,440,290	3,845,000	3,492,830	3,150,840	2,881,580
25	5,554,060	4,921,050	4,487,080	3,890,190	3,536,030	3,191,840	2,920,890
26	5,596,260	4,960,860	4,531,080	3,932,690	3,577,430	3,231,750	2,956,300
27	5,635,460	4,997,570	4,567,590	3,973,200	3,612,550	3,264,870	2,986,830
28		5,032,690	4,602,710	4,007,120	3,645,170	3,296,900	3,016,360

53

VI. 보수체계 개선(안):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

1안과 2안 비교

일반직 공무원 기본급 대비

- 1안은 청소년시설 1급에서 812,064원 적고, 7급은 268,751원 많게 나타남.
일반직 공무원도 낮은 급수의 상향 조정이 예상되어 실질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
- 2안은 청소년시설 1급에서 93,737원 낮은 수준이고, 7급도 49,141원 낮게 나타남.

사회복지시설 기본급 대비

- 1안은 청소년시설 1급에서 51,886원 많고, 7급은 44,252원 많게 나타남.
- 2안은 청소년시설 1급에서 770,213원 높고, 7급은 273,639원 낮게 나타남.

최저임금 충족, 직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1안을 선택하여
최저수준 청소년지도사 보수기준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VI. 보수체계 개선(안):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

1안과 2안 비교

구분	3급/관장/1급	4급/국장/2급	5급/1급/3급	6급/2급/4급	7급/3급/5급	8급/4급/6급	9급/5급/7급
① 2019 일반직공무원	4,686,840	4,155,670	3,828,940	3,313,540	3,000,180	2,701,100	2,457,040
② 2019 사회복지시설	3,822,890	3,629,070	3,558,530	3,264,810	2,987,740	2,745,030	2,681,540
③ 청소년시설 실태 (2017 기준)	3,037,800	2,569,510	2,510,420	2,154,070	1,873,870	1,567,810	1,544,070
④ 2019 청소년시설 최저기본급1안	3,874,780	3,648,140	3,560,130	3,276,220	2,992,400	2,814,230	2,725,790
⑤ 2019 청소년시설 최저기본급2안	4,593,100	4,072,550	3,752,370	3,247,270	2,940,170	2,647,080	2,407,900
④ - ①	-812,060	-507,520	-268,810	-37,310	-7,770	113,120	268,750
④ - ②	51,880	19,060	1,590	11,410	4,660	69,190	44,250
④ - ③	836,980	1,078,620	1,049,700	1,122,150	1,118,530	1,246,410	1,181,710
⑤ - ①	-93,730	-83,110	-76,570	-66,270	-60,000	-54,020	-49,140
⑤ - ②	770,210	443,480	193,830	-17,540	-47,570	-97,950	-273,630
⑤ - ③	1,555,300	1,503,040	1,241,940	1,093,200	1,066,290	1,079,260	863,820
⑤ - ④	-718,320	-424,410	-192,230	28,950	52,230	167,140	317,890

※ 원단위 절사 ※ 구분의 가로는 공무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시설 직급임

※ ① 일반직 공무원 및 ② 사회복지시설은 2019년도의 1.8%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55

VI. 보수체계 개선(안):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당체계(안)

- 시설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당체계를 10종으로 간소화하고 수당지급액의 편차 축소, 복잡한 수당계산 문제를 해결

수당 종류	지급 기준
① 기말수당	• 월봉급액(기본급)의 100% / 50%씩 연 2회 지급(1·7월 또는 6·12월)
② 가족수당	•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단, 자녀의 경우 4명 초과 허용) • 매월 배우자 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자녀 이후부터 월 10만원
③ 자녀학비보조수당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제외) • 연 4회(2·4·8·11월), 신입생은 3월 지급 / 상한액 46만원 범위 내에서 학비 전액 지급
④ 육아휴직수당	• 통상임금의 40%(상한 100 ~ 하한 50만원) / 고용보험법, 공무원 수당 등 규정 참고
⑤ 자격증수당	•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차등 지급 / 1급 5만원, 2급 4만원, 3급 3만원
⑥ 초과근무수당	•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 근무한 직원 • 4~7급: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 초과근로시간 × 월통상임금 × (1/209) × 1.5 • 1~3급: 관리업무수당 / 월봉급액(기본급)의 9%
⑦ 정액급식비	• 정액 월 13만원
⑧ 명절휴가비	• 월 보수(기본급)의 120% / 60%씩 2회 지급(설, 추석)
⑨ 연가보상비	•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잔여연가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규정 기준
⑩ 교통보조비	• 적급별 매월 12~15만원 / 1~2급: 150,000원, 3~4급: 140,000원, 5~6급: 130,000원, 7급: 120,000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56

V. 결론 및 정책제언



V. 결론 및 정책제언

향후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



III. 타 직종과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비교

청소년정책현장의 자발적인 노력

자발적인 청소년지도사 협의체 구축 및 운영

- 전국 청소년지도사가 스스로 「(가칭)청소년지도사협회」 등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자발적 노력 경주
- 장기적으로 협회 등을 법제화하여 법정 기구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청소년지도사의 권리 및 정당한 보수체계 확보를 위한 활동

- 각종 선거 등에 청소년지도사의 권리(보수체계 등)를 정책과제로 전달
- 청소년문제, 사회이슈 등에 대한 의견을 정부 등에 적극 제안
- 정부나 시민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청소년지도사 연관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 적극 참여

- 청소년지도사 연관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 등에 적극 참여
- 청소년지도사 스스로 학습동아리를 통한 개별역량 증대

감사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토론문

유 성 렬 백석대학교 교수

- 본 연구는 현행 청소년지도사 양성 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및 급여 수준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연구로 사료됨
-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청소년지도사 양성 체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2005년에 결정된 과목 수와 과목명으로 급변하는 현장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자격검정과정에서 2급 및 3급 자격의 차별성 확보가 어려우며, 유사자격에 비해 검정과목 이수 학점 수의 부족 및 학점기준이 부재하다는 것,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 2급 자격검정에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면접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의 타당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의 4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구분	A안	B안	C안	D안
급수	1·2·3급	1·2급 (3급 폐지)	1·2·3급	1·2·3급
급별 이수과목 수	1급: 5개 2급: 8개 3급: 7개	1급: 5개 2급: 8개	1급: 5개 2급: 10개 이상 3급: 5~6개 이하	1급: 5개 2급: 10개 이상 3급: 10개 이상
급별 응시자격	1급: 현행 유지 2급: 현행 유지 3급: 현행 유지	1·2급: 전문학사 이상	1급: 현행 유지 2급: 현행 유지 3급: 현행 유지	1급: 현행 유지 2급: 전문학사 이상 3급: 전문학사 이상
현장실습 (160시간)	2급 응시자 선택 (선택 시 연수 면제) 3급: 미적용	응시자 전면 의무화	2급 응시자 의무화	2급 응시자 의무화
시험	1급: 필기 2급: 필기 3급: 필기	1급: 필기 2급: 면접	1급: 필기 2급: 면접 3급: 면접	1급: 필기 2급: 필기 3급: 면접
자격 연수	현장실습 미이수자 의무 이수	폐지	1급: 의무 이수 2급: (선택) 3급: 의무 이수	1급: 폐지 2급: (선택) 3급: 의무 이수

구분	A안	B안	C안	D안
특징	· 현행 체제 유지 · 필기시험 도입 · 현장실습 이수 시 자격연수 면제	· 3급 폐지 · 현장실습 의무화	· 현행 체제 유지 · 급별 이수과목 수 조정 · 2급 응시자 현장실습 의무화	· 현행 체제 유지 · 2급 필기시험 도입 · 2급 응시자 현장실습 의무화
	· 필기시험 도입에 따른 역량 제고 · 2급과 3급간의 차별성 문제 상존 · 2급과 3급에서의 면접시험 시행 여부	· 자격체계 간소화 · 자격체계의 변경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필요(지도사 배치기준 등)	· 1급 응시자에 대한 현장실습 의무화 검토 필요 · 3급 소지자의 2급 시험 응시 요건 명료화 필요	· 대학 및 전문대학 구별 없이 과목 이수자는 3급 취득 가능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2급 취득 가능 · 필기시험 과목 수 조정 검토

-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격검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론적 혹은 이념적 관점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현실적인 맥락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이어야 함. 이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는 대학 및 청소년지도사를 고용하는 청소년현장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 대학의 입장에서 변경되는 자격검정제도가 현행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특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전공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공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청소년 현장의 관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배출되는 청소년지도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며, 자격검정제도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당초 연구가 시작된 문제의식을 감안하면, 제시된 4개의 안 가운데 D안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2급 및 3급간의 차별성 확보, 짧은 시간의 면접에 의존하는 2급 자격검정 방식의 개선 및 현장실습 도입 등을 통해 현행 자격검정제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핵심 사안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을 사료됨
- 그러나 위에 제시된 변경안은 앞서 언급되었던 문제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의 최저 학점 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자격 이수를 위한 이수 과목의 수가 지정된 상황에서 과목당 학점 수를 제시하거나 또는 자격 이수를 위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총 학점 수 등을 지정하여 최소 기준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D안에서와 같이 자격 이수과목을 10개 과목으로 지정할 경우 과목당 3학점으로 학점 기준을 제시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하는 총학점수는 30학점임

- 유사 자격과 비교할 때 30학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대학에서는 전임교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증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격 이수를 위한 이수과목 수를 1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필기시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본 개선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현장실습의 도입임. 일부 대학에서는 현장실습을 졸업요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현장에서도 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자격검정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청소년현장에서 실습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장실습 지도 인력의 확보 및 연수, 현장실습 내용 표준화, 현장실습 운영 체계 수립 등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대학과 현장의 협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장실습과 자격연수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격연수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두 가지를 연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이수 과목의 수를 결정하는 것보다 어떤 과목을 이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위하여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사의 보수체제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제시한 문제점 및 실태에 대한 분석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국가표준보수기준표의 부재로 인한 현장에서의 불만에 적절히 대응하고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청소년지도 처우개선 관련 과제를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지도사 보수체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지도사의 보수수준 책정의 기초가 되는 직무분석과 전국 청소년지도사의 보수 수준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의 정기적인 실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처우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자의 제안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토론문

배 정 수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장

오늘의 이 포럼은 자격 취득자 5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의 현황을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전문가로서, 적절한 수입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는 직업인으로서 청소년지도사의 처우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청소년 현장과 청소년지도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독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창욱 박사님의 발제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토론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몇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발제자는 1993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3번의 제도 변화를 겪으면서 약 5만여 명의 지도사가 배출되었고, 대학 등 청소년지도사 양성 기반이 다양화되었으며, 특히 2008년 이후에는 매년 3, 4천 명에 이르는 지도사가 배출되는 큰 폭의 양적 성장과 청소년 정책·사업의 토대가 마련되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한계점으로 양성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검정과목, 현장실습, 면접제도, 자격연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청소년전문가패널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조사의 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시험, 실습, 면접, 연수를 조합한 4가지의 양성제도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의 한계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합니다.

우선 검정과목 혹은 필수 이수 과목의 확대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정과목이 정해진지 이미 십여 년이 흘렀고 그동안의 사회변화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낡은 인상을 줍니다. 그것이 시험을 치르는 제도로 변하든 지금처럼 이수하면 시험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남아 있든 그 과목의 수는 다양해져야 하고 내용은 더 치밀해져야 합니다. 더불어 과목당 이수학점의 기준도 당연히 정해져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한 학기면 청

소년지도사 자격취득 가능'이라는 문구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현장실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청소년활동현장과 지도자들의 노력, 학생부종합전형(구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등으로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청소년활동 현장을 경험한 이들도 있지만 전공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청소년활동 현장을 깊이 있게 접해보지 못하고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과 학점은 행제 등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습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정의 체계를 이해하거나 매끄럽게 일처리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습 현장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약속이 없습니다. 각 기관별로 학교별로, 실습을 담당하는 지도자별로 상이합니다. 대학 등 양성기관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을 현장의 기관, 시설들로 지나치게 떠미는 부분이 없지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현장실습의 의무화 혹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실습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경험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뉴얼이든 법 조항이든 현장실습이 담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습을 받아줄 기관과 지도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발제문에 포함된 16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8시간, 20일이 소요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실습을 한다면 20주, 거의 5개월이 필요합니다. 방학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어떤 형태든 실습생에게도, 기관이나 실습지도자에게도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발제문의 설문조사에서는 실습지도가 이루어지는 기관이 채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실습 지도를 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은 우대받아야 마땅하지만 모든 실습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겠지만 부실한 프로그램, 단순한 노무만을 반복하게 하는 행위, 폭언과 갑질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습이 의무화되면 이런 폐단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면접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시험이 면제된 상황에서 면접은 청소년지도사로서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발제문에 기술되었듯이 그 기능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의 면접이 청소년과 청소년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지식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때 현장실습이 강조되고 의무화된다면 없어져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연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발제문은 현장실습과 자격연수를 여러 조합으로 묶어서 상호 보완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하는 경우 연수를 면제하거나 실습과 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실습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얻어야 하는 것과 자격 연수의 과정에서 얻는 것 혹은 얻어야 할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실습 과정은 개인 혹은 많지 않은 소수를 대상으로 한 개의 기관 혹은 시설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연수는 전국단위의 다수를 함께 모아서 운영합니다. 연수는 단순히 무언가를 전달하는 자리라고 아니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토론하면서 동질감을 찾아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문의 마지막 제언에서 청소년정책 현장의 자발적 노력을 이야기하면서 자발적인 청소년지도사 협의체 구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저는 자격연수의 시기야말로 이런 협의체 구성을 위한, 또 협의체에 새로운 회원을 영입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수의 운영방식과 구성 내용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진단이 나오고 개선방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무언가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불만과 문제의식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성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도 개선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양성제도의 개선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청소년지도사로 진입하는 장벽만을 높여서 오히려 관심과 영역 확대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를 희망해봅니다.

2.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개선(안)

2018년 말, 비록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한정된 것이지만 드디어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송부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적인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된 인건비 기준은 단 두 개, 방과후아카데미와 배치지도사 인건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일부 지자체는 배치지도사 급여를 청소년지도사의 표준 급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배포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에 그 실행을 요구할 근거가 생겼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아산에서는 지난 12월 전국 최초로 시행을 의결하여 올해부터 반영하고 있고, 곧 문을 열게 되는 문화의집에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기본급의 다소, 급수의 적용, 수당의 종류 등 하나 하나 따지기로 하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논의에는 청소년지도사가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부산, 경남, 전남과 전북, 대구, 강원, 범충청지역(대전, 세종, 충청남북도)등에 명칭은 다르지만 청소년지도사협회가 결성되어 움직이고 있습니

다. 내년 초, 전국지도사협회의 발족을 위해 여러 움직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 결론

다음의 내용으로 토론을 정리할까 합니다.

-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을 없애던 때의 이유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 이수 과목 혹은 검정과목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대학 등 양성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매뉴얼의 개발, 실습지도 기관과 지도자에 대한 부가 혜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 면접은 다른 부분의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없애는 것도 좋겠습니다.
- 현장실습과 자격연수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격연수는 필수요소로 두었으면 합니다.
- 청소년지도사의 처우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청소년지도사가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국청소년지도사협회의 창립에 힘 모아주시요.

MEMO

MEMO

MEMO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인 쇄 2019년 9월 17일

발 행 2019년 9월 1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415-2114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